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22일, 박홍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8차 전체회의(2025. 11.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배의원)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해외진출 지원대상 물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 사업과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2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 물기업의-----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3. ----- 국제규격화, 기술·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신설>	4.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물기업¹⁾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3년 기준 국내에 18,075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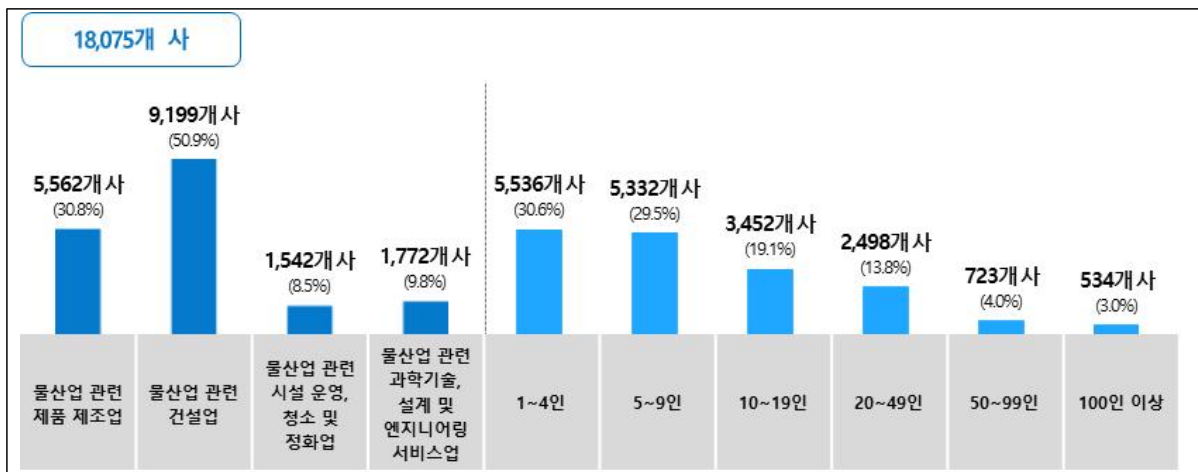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 라. 「수도법」 제3조제35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개사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사로 전체 사업체의 50.9%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물산업 관련 제조업이 5,562개사로 전체의 30.8%,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청소 및 정화업이 1,542개사로 전체의 8.5%,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1,772개사로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 규모별로는 1~4인 사업체가 5,536개사(3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9인 사업체가 5,332개사(29.5%)로, 종사자 9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60.1%를 차지하고 있음.

[물산업 사업체 현황]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현행법 제21조2)는 중소기업인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 7. (생략)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물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25년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수행기관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글로벌 물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우위가 가능한 중소기업 선정 및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R&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5,000	한국 물산업 협의회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주요 진출 유망국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을 통한 진출전략 수립 및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100	한국 물산업 협의회
민관협력 해외진출 시범사업	정부-공공기관-물기업 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G2G협력, 기술·행정분야 등 지원	230	한국 물산업 협의회
물산업 동반성장 여건 조성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현지 기술 검증 지원, △국제공동 물분야 기술개발 협력 시범사업, △전문가 초청 협력세미나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200	한국 물산업 협의회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장성이 높은 유망 권역의 시장 선점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협력사	220	한국 물산업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수행기관
	절단 파견, △국제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포럼·마케팅 등 지원		협의회
해외 인·검증 지원사업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인증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인증 지원	403	한국 물기술 인증원
미국 NSF 인증대행 사업	국내 물기업의 NSF 취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작성, 시료 배송 및 제품시험 등 전 과정 지원	762	한국 물기술 인증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출물류(운임 등), △해외인증(취득·갱신 등), △사업화(해외 법인설립, 국외출장 등) 등 중소기업 수출 필수사항 원스톱 지원	575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해외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해외 수요처 확보된 물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현지 기술평가 및 테스트 등 현지 실증화 지원	150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주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예산으로 수행 중인 사업 현황이며, 기관 자체 사업 등 별도 지원사업 존재함. 한국자원공사에서 수행 중인 해외 물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제협력)에 따라 추진 중임.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국내 물기업 중 해외진출 기업은 약 450개사로 전체 기업(18,075개사)의 약 2.5%에 불과함³⁾.

3)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물산업 사업체 유형별 해외 진출 개소]

(단위 : 개)

구 분	현지법인		지점		기타유형		계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전 체	275	270	52	66	127	114	454	450
1.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241	232	44	57	127	114	412	403
2. 물산업 관련 건설업	24	22	-	-	-	-	24	22
3.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청소 및 정화업	6	12	4	5	-	-	10	17
4.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	4	4	4	-	-	8	8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물분야 해외사업은 기술·장비·제품의 수출 사업⁴⁾부터 투자·운영형 사업⁵⁾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진출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4)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여 정수 및 하·폐수처리, 계측기기, 필터, 펌프 등 단위기술, 기자재 등 해외 수출 및 기술 컨설팅 제공

5) 사업의 대규모 투자비용 및 회수 기간을 고려하여 BOT, BTO, PPP, O&M 등의 형태로 사업 추진
[투자·운영형 사업 유형]

대표 유형	내 용
BOT (Build - Operation - Transfer)	민간이 건설 및 일정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BTO (Build - Transfer - Operation)	민간이 시설 건설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보유
BOO (Build - Own - Operation)	민간이 시설을 건설·소유·운영
PPP (Public - Private - Partnership)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운영하며 수익과 위험 분담
O&M (Operation & Maintenance)	민간에서 완공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해외진출 지원대상 물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 사업과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개정안과 같이 해외진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의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를 통해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⁶⁾.

6) 참고로, 개정규정 외에 동법 상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은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및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가 있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공법 또는 제품(부품·장치·기기·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장치·기기·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인 물기업에서 전체 물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인력, 자본, 정보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동반진출을 우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를 “물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술·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5.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u>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u> 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 <u>물기업의</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기술 · 공법 또는 제품의 수</u> <u>출 지원</u>
<u><신 설></u>	5. <u>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u> <u>위한 사업 발굴 · 개발 및 해</u> <u>외 수주 지원</u>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